2017년도 임금협약(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은 단체협약 제3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3조(임금의 정의) 이 협약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통상임금이라 함은 조합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단 연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인 경우도 그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임금 총액에 산입한다.

제4조(적용기간) 직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 또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 타결시점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5조(임금인상) 2017년도 임금인상률은 2016년 보수 대비 기본급(보수규정 봉급표)의 3.0% 인상한다.

제6조(제수당) 제수당의 내용과 지급률 및 지급액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7조(초과근무수당) ①사업회는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4, 5급 직원에 한하며, 최대 지급금액은 기본급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한다.

②노사 상호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며, 사용자는 불가피한 휴일근무의 경우 노동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8조(연차수당) ①사업회는 업무상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2017년 연차수당은 예산 삭감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연말 인건비 예산의 불용분이 발생할 경우 잔여 연차 휴가에 대해 최대한 보상한다.

②미사용 연차휴가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도입하여 시행한다.

제9조(대우수당) ①사업회는 인사적체 문제의 해소와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하여 2014년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상 직원들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②대우수당 지급 대상 직원 중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에게는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사업회는 인사적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승진대상자들에 대해 최대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성과상여금) ① 성과상여금은 성과평가 후 차등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2018년 1분기 중에 지급한다.

제11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관련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노동조건은 단체협약 및 제반 노동관계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제3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사업회와 조합이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2017. 4.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조합
교섭대표 이사장 박상증	교섭대표 이영교
교섭위원 기획관리실장 이선태	교섭위원 김성일